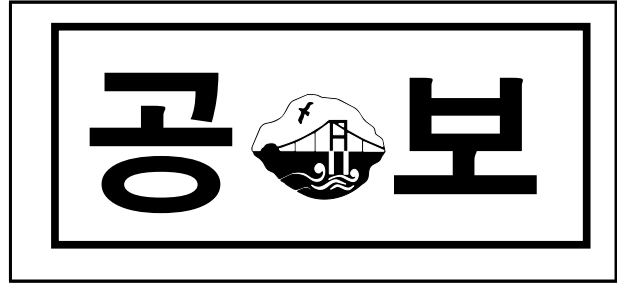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672호 2020. 9. 8.(화)

선 람	기 관 의 장

##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72호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473호	남해군 액화석유가스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7
남해군 조례 제2474호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8
남해군 조례 제2475호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남해군 조례 제2476호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 조례	22
남해군 조례 제2477호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25
남해군 조례 제2478호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27
남해군 조례 제2479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32
남해군 조례 제2480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14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42
남해군 고시 제2020-1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43
남해군 고시 제2020-152호	남해군관리계획(에코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44
남해군 고시 제2020-153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고시	52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1087호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7
남해군 공고 제2020-1095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69
남해군 공고 제2020-1097호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0
남해군 공고 제2020-1120호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76
남해군 공고 제2020-1122호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93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4, 행정 3044)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72호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군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남해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 1. 상황총괄팀
- 2. 활동관리팀
- 3. 활동지원팀
- 4. 그 밖에 단장이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 3. 자원봉사자의 규모
-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 5. 그 밖의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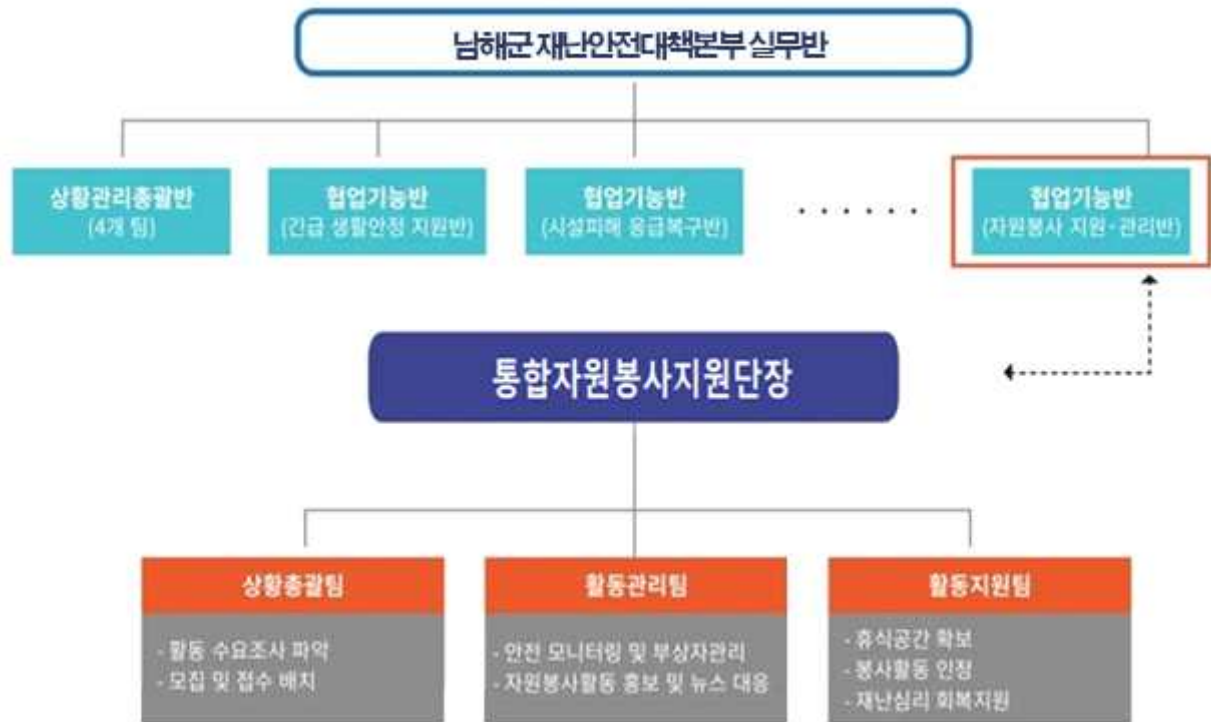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

팀명	직위	담당 사무
남해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장	남해군 자원봉사센터장 (공무원/민간인)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 자원봉사활동 상황관리 및 필요사항 발굴·지원
상황총괄 팀	남해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총괄지원
	주민복지과 자원봉사담당팀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재난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주민복지과 자원봉사 담당자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활동관리 팀	대한적십자사 남해지구협의회장	▶ 자원봉사 활동 홍보 및 모니터링 ▶ 자원봉사자 편의시설 지원 등
	남해군 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 팀	남해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 재난현장 부족 자원 파악 ▶ 자원봉사자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남해군 자원봉사센터 전산코디	▶ 재난심리 회복 지원 및 부상자 인계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비 고

·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남해군 조례 제2473호

## 남해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1. 공통사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기본법」,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나.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물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로 한다.
- 나.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나. 용기보관실, 사무실 등의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m<sup>2</sup> 이상으로 할 것
  - 2) 사무실의 면적은 18 m<sup>2</sup> 이상으로 할 것
  - 3)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 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m<sup>2</sup>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다만,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는 제외한다)

남해군 조례 제2474호

##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등의 제한)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이와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 신청) 주민이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① 읍·면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9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75호

###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를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로,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를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점용료등의 산정 기준)”을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을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시지가”를 “표준지공시지가”로, “동법 제

10조제2항”을 “같은 법 제3조제8항”으로,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을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후단 중 “1월미만”을 “1월 미만”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1월미만”을 “1월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1년미만”을 “1년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월미만”을 “1월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제곱미터미만의”를 “1제곱미터 미만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제곱미터 미만”을 “1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를 “법 제22조제4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하천 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유수점용한”을 “범위에서 생활용수로 유수를 점용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항) 본문 중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점·사용하여”로, “10퍼센트이상”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점용료 등”을 “점용료등”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점·사용등허가”를 “점·사용등의 허가”로, “허가시”를 “허가 시”로, “연도 3월내에”를 “연도의 3월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를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경우에”로, “징수시기”를 “징수 시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에 따라”로, “허가량 만큼”을 “허가량만큼”으로, “경우에는 그 허가가”를 “경우 그 허가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제9조의 제목 “(부과징수 위임)” 을 “(부과·징수의 위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과징수, 및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를 “부과·징수, 법 제14조제1항제1호” 로, “규정한 점사용 허가를 관한 업무는” 을 “따른 점·사용 허가에 관한 업무를” 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허가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

구 분	산 정 기 준
<p>1.공작물 설치(군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p> <p>2. 토지의 점용</p>	<p>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p> <p>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골재채취업은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p> <p>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p>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p> <p>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p>
<p>3. 하천부속물의 점용</p>	<p>제1항에 준한다.</p>

구 분	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	<p>가) 전기 사업 초당 1㎡ 이상 사용 시 연액 20만원</p> <p>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요금 또는 사용료 적용</p> <p>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 초당 0.05 ~ 0.5㎡까지 연액 1만원 ○ 초당 0.5㎡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p>
5. 지하의 유수 채취	<p>제4항(유수의 점용)의 기준에 준한다.</p>
6.배수(주수)	<p>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나"목의 3분의 1 다만, 월 1만㎡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p>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5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 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 "나"목의 4분의 1 다만, 월 1만㎡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7.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	<p>가) 군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등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p> <p>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p> <p>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p>

구 분	산 정 기 준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토지의 점용)에 준하여 결정한다.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2]

점용료등 조정산식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 이상 2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 이상 5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 이상 10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 이상 20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 이상 50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

[별표 3]

허가수수료의 기준

사 항 별	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 성토 등 토지의 형상 변경의 허가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2.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1천분의 1
3.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허가	점용료의 1천분의 1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받는 법 제22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허가	없음

남해군 조례 제2476호

###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설치”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 본문 중 “한해지역”을 “가뭄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기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대부기간에”를 “대부기간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한해대책외 사용)” 을 “(가뭄대책외 사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배수” 를 “농경지 긴급 배수”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재난·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손부분을” 을 “파손부분에 대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결점” 을 “점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말미암아” 를 “인하여” 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 양 수 기  
[ ] 발 동 기      사용신청서

신청인	성명  (남/여)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내용	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주 소)	사용기간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을 이장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

---



---

남해군 조례 제2477호

##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
-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헌혈 장소의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이 남해군 관리 공유재산에 대해 헌혈 장소 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헌혈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78호

##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신변을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남해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인”이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부조리”란 공무원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행위

4. “신고보상금”이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신고) ① 누구든지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감사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신고사항의 보완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고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완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를 폐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5조(사실조사 등) ① 군수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에 걸리는 기간
- 2. 피신고인의 장기출장·휴직·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기간
- 3.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 4. 그 밖에 조사 중 신고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늦어지는 기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으로부터 진술서 등의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신고인등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한 사람과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등”이라 한다)의 신고내용 등 모든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인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등의 동의를 받아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인등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피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 공무원등은 신고인등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인등을 알아내기 위한 탐문을 하는 등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④ 신고인등은 피신고인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등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신고인의 모든 비밀을 보호하고, 피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성실의무) ① 신고인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서 신고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피신고인은 제5조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8조(조사결과 조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징계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인이 「형법」 제156조에 해당되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신고인을 수사기관에 무고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제9조(신고보상금 심사·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되, 여러 사람이 같은 사안을 신고한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은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결정한다.

제10조(신고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9조제2항에 따른 결정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1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부패행위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신고보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된 경우

제12조(환수) 군수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신고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 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 별 표 ]

##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1. 유형별 지급 기준

구분	지 급 대 상	보상금 지급 기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조제3호가목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li> <li>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금액의 20배 이내</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조제3호나목 관련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 당시 추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 이내 단, 추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10% 이내 추가 지급</li> <li>지급 당시 추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추정액의 10% 이내 단, 사후 추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20% 이내 추가 지급</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조제3호다목 관련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행위의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li> <li>알선·청탁행위 신고 : 1,000천원 이내</li> </ul>

### 2. 지급액의 상한액 기준

가. 신고보상금의 지급 상한액은 10,000천원으로 한다.

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지급 결정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79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남해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농공  
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3조(「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남해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이란”을 ““녹색제품”이란”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4조,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제2조제3호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을 “녹색제품 구매·생산을”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녹색제품 구매지침”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품목”을 “녹색제품 구매품목”으로,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녹색제품 구매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을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을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을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녹색제품 판단기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내기업의친환경상품”을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남해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의 개정) 남해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를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를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5조(「남해군 체육진흥협회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체육진흥협회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남해군 장애인 한아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장애인 한아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한다.

제7조(「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8조(「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9조(「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0조(「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의 개정)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1조(「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2조(「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3조(「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2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5조(「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7조(「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8조(「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9조(「남해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관람료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제10호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 (제17조 관련)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기관(제3조의 기관, 이하 같다)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기관에서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
  -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정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초까지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지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남해군 조례 제2480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8일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제3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의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17조제6항·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의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 2.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시설
  - 가.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 나.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대부료 등의 100분의 25

제37조제9호 중 “자” 를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14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남 해 군 수

- 1. 하 천 명 : 대사천(지방하천)
- 2. 성 명 : 남해군수(환경녹지과장)
-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4. 점용목적 : 고현 독방 화전별곡 프로젝트  
(태양광 가로등 설치, 식물 재식 및 관개수로 설비 등)
-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922-9 외 27필지
- 6. 점용면적 : 5,751㎡
- 7. 점용기간 : 2020. 8. 26. ~ 영구점용(공사기간: 허가 후 착공일로부터 120일)

남해군 고시 제2020-151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화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재난안전과장)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점용목적 :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설치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949-10번지
6. 점용면적 : 1㎡
7. 점용기간 : 2020. 9. 2. ~ 2025. 9. 1.(5년)

남해군 고시 제2020 - 152호

### 남해군관리계획(에코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에코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 및 환경녹지과(055-860-325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9. 8.

### 남 해 군 수

- 1. 위 치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64-3번지 일원
  - 2. 면 적 : 67,860㎡
  - 3. 남해군관리계획(에코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붙임 참조
  - 4. 관계도면 : 실음생략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남해군관리계획(에코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9	에코촌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이동면 무림리 1164-3번지 일원	-	증)67,860	67,86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결정 사유
19	에코촌 지구단위계획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li> <li>- A = 67,86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면 무림리 일원에 소재한 기수지역과 해안 숲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단순한 통과거점이었던 이동면을 지속적인 체험 프로그램 수요 확보를 통한 숙박, 체험, 교육,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체류형 복합관광지인 에코촌으로 조성하고자 함</li> </ul>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67,860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40,325	59.4	
에코센터 및 체험관	4,709	6.9	문화 및 집회시설
에코빌리지	8,379	12.4	숙박동
힐링캠핑장	8,981	13.2	오토캠핑장
테마광장	18,256	26.9	물놀이체험장, 자연놀이터, 야외무대, 노을쉼터 등
공공시설용지	27,535	40.6	
도로	2,875	4.2	진입도로
녹지용지	24,660	36.4	
완충녹지	7,492	11.0	
경관녹지	17,168	25.3	갈대습지원 (차폐녹지대 포함)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577	2,875	-	-	-	1	447	1,213	1	130	1,662
중로	1	130	1,662	-	-	-	-	-	-	1	130	1,662
소로	1	447	1,213	-	-	-	1	447	1,213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30	소로2-106 (이동면 무림리 1164-125)	에코빌리지 경계 (이동면 무림리 1164-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06	8	집산 도로	8,864	이동면 석평리 841-7	삼동면 지족리 291-19	일반 도로		남해군고시 제2017-6호 (2017.1.25.)	
변경	소로	2	106	8~14	집산 도로	8,864 (447)	이동면 석평리 841-7	삼동면 지족리 291-19	일반 도로			일부 구간 확폭

주) ( ) 안의 연장은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변경 사유
-	중로3-1호선	○노선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130m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진출입도로 신설
소로2-106호선	소로2-106호선	○일부구간 노폭확폭 - 폭원 = 8m → 8~14m - 연장 = 447m (지구단위구역내 연장임)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 설치에 따른 노폭 변경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완충 녹지	이동면 무림리 1164-19 일원	-	증) 7,492	7,492		
신설	2	녹지	경관 녹지	이동면 무림리 1164-23 일원	-	증) 17,168	17,168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녹지	○신설 - 완충녹지 - A = 7,492㎡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신설에 따라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공해, 사고, 재해 등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완충녹지 결정
2	녹지	○신설 - 경관녹지 - A = 17,168㎡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습지갈대숲을 보전하여 생태체험 및 학습의 장으로 이용코자 경관녹지 결정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sup>2</sup> )	
I -1	I	4,709	이동면 무림리 1164-4번지 일원	4,709	에코센터 및 체험관
II -1	II	35,616	이동면 무림리 1164-8번지 일원	8,981	힐링캠핑장
II -2			이동면 무림리 1164-22번지 일원	18,256	테마광장
II -3			이동면 무림리 1164-16번지 일원	8,379	에코빌리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1	이동면 무림리 1164-4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2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1	이동면 무림리 1164-8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1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축선		-
II-2	이동면 무림리 1164-22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중 화장실, 관리사무소, 급수 및 배수 관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체력단련장, 놀이형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 운동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중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li> </ul>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1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3	이동면 무림리 1164-16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2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축선		-

2) 공공시설용지 : 건축물의 건축 불가

남해군 고시 제2020-153호

##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남 해 군 수

1. 고시명 :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의 규약제정 목적 규정(제1조)
- 나.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제3조)
- 다.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 라. 협의회의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 규정(제6조)
- 마.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제11조)
- 바. 협의회의 재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규정(제13조~제16조)

##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전승은 물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해 농어업 및 관광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 명칭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어업유산 소속 자치단체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 지역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공동발전 및 화합과 교류에 관한 사항
4. 제도·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등 공동건의 사항
5. 사무국 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운영) ①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는 금산군, 완주군, 부안군,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완도군, 무안군, 신안군, 상주시, 의성군, 울진군, 울릉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제주특별자치도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은 위 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되 각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협의회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는 회장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에 둔다.

②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2항에 따른 공무원 파견 대상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 1. 협의회장 소속 자치단체 공무원 1인
- 2. 부회장 소속 자치단체 공무원 1인
- 3. 협의회 회원 소속 자치단체 공무원 1인
- ⑤ 자치단체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공무원 파견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회 회의의결을 통해 공무원 파견 대상 자치단체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사무국장과 직원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자문위원) ① 협의회 주요 의안이나 정책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에 대한 제 수당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회를 둔다.

-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각 자치단체의 농어업유산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참석자의 범위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사전에 논의하여 결정한다.
-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농어업유산 담당 부서장이 된다.
-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전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 마다 안전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 ④ 협의회 안전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⑤ 회의 개최 후에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각 자치단체에 송부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도와 연계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참석) ①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안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발표를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결)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표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회사항의 조정)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재원) 협의회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연회비
- 2. 특별회비, 기부금
- 3. 기타수입, 적립금이자

제14조(회비) ① 회비는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다.

제15조(회계연도) 협의회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세입·세출예산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매 정기회의 시 경비 또는 부담액의 수입·지출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익년도 첫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의 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 잔액을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협의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1087호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남 해 군 수

1. 개정 이유

무상 의무교육 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 장학금 지급 기준을 공납금이 아닌 정액지급 및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평가기준을 통해 장학금체도의 공정성 제고를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자격제한 없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이장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는 신청가능(안 제2조)
- 나. 투명하고 구체적 장학생 평가기준 마련(안 제4조제1항)
- 다.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안 제6조)
- 라. 타기관 등에서 받은 장학금이 이장자녀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16일까지 남해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aerie@korea.kr

2) 주소: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3) 팩스: 055-860-3737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전화: 055-860- 3142)에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아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한다.

제3조 중 “군수에게” 를 “군수에게 추천하되, 이장 1명 당 자녀 또는 손자, 손녀 1명을”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장학생 선발기준” 을 “별표의 평가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면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 1. 중학생: 20만원 이내
- 2.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 3. 대학생: 100만원 이내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장학금의 수혜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연간 수업료” 를 “장학금”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별표]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총점 배분

계	이장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이장 상훈	기장학금 수혜여부
100	30	30	20	2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 경력

근속연수	7년 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1년미만
점 수	30	25	20	15	10	5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 성적 분야 (신 청직 전학 기)	중· 고등 학생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90%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60%미만
	대학 생	평균 학점				
		4.0이상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5이상 3.0미만	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도 대표급, 도지사,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군 대표급, 군수, 교육장표 창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 창 수상자	수상경력 이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		30	25	20	15	10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학년의 성적으로 하고,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보통 이상 과목수/전체 과목수’ 로 계산한다.

다. 이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하나만 인정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 도지사	군수
점 수	20	15	10	5

라. 기 장학금 수혜여부

횟 수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점 수	20	15	10	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u>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 학교 학년의 성적이 해당 학년 학생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u></p> <p>1. <u>고등학생 : 신청 직전 학기의 학업성적이 해당 학년 학생의 100분의 50 이내인 학생</u></p> <p>2. <u>대학생 : 신청 직전 학기의 평균학점이 3.0 이상인 학생</u></p> <p>3. <u>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u></p> <p>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이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u>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한다.</u></p>
<p>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p>	<p>제 3 조 ( 추 천 ) -----</p>



남 해 군 공 보

(64) 제 672 호

2020년 9월 8일

현 행	개 정 안
<p>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초에 선정하여 <u>군수에게 추천한다.</u></p>	<p>----- ----- ----- ---- <u>군수에게 추천하되, 이장 1명 당 자녀 또는 손자, 손녀 1명을 -----.</u></p>
<p>제4조(선발) ① <u>군수가 읍·면장 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군수가 정하되, 필요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읍·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제4조(선발) ① <u>----- 별 표의 ----- 평가기준 -----.</u></p> <p>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면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제6조(장학금액) <u>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장학금 중 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lt;</u></p>	<p>제6조(장학금액) <u>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학생: 20만원 이내</u></li> <li>2. <u>고등학생: 50만원 이내</u></li> <li>3. <u>대학생: 100만원 이내</u></li> </ol>

현 행	개 정 안
<p><u>조 전문개정 2018. 8. 17.&gt;</u>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②                      (생 략)  <u>&lt;신 설&gt;</u></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                      로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p> <p>1. (생 략)                      2. 장학생이 <u>연간 수업료</u>에 상응                      하는 다른 지원금을 해당 연도                      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                      되어 있을 경우                      3. (생 략)                      ② (생 략)</p>	<p>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                      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장학                      금의 수혜금액이 제6조의 장학                      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                      액을 지급한다.</u></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                      -----                      -----                      -----.</p> <p>1. (현행과 같음)                      2. ----- 장학금-----                      -----                      -----                      -----</p> <p>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장 학 금 신 청 서

이장 인적사항

- 주 소: 남해군 읍면
- 성 명: (한자: , 성별: 남·여)
- 생년월일: (만 세)
- 이장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년 월)
- 공적개요: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 년: 학년 반 ( 학과)
- 성 명: (한자: , 성별: 남·여)
- 생년월일: (만 세)
- 성적 또는 특기개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조손가정 여부: 확인자: (인)

남해군 년도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읍면장 추천의견

붙임: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읍면장 (인)

남 해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장 학생 추천서

- 1. 주 소:
- 2. 학교명:            학년                    학과
- 3. 성 명: (한글)                              (남 · 여)  
(한자)
- 4.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성            적	품            행
<p>1. 직전학기 학업성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총과목수:    과목</li> <li><input type="checkbox"/>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과목</li> <li><input type="checkbox"/> 평균학점:</li> </ul> <p>2. 기능, 체육, 예능분야 입상성적:</p> <p>3.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장학금명:</li> <li><input type="checkbox"/> 장학금액(원):</li> </ul>	<p>1. 예의범절</p> <p>2. 학습태도</p>

**붙임:** 성적증명서(원본) 또는 예체능 입상성적 증명서(사본) 1부.

※대학생의 경우, 평균환산점수(4.5만점 기준)가 기재된 성적증명서 첨부

          년        월        일

학교장 · 총장 · 학장    (직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20-1095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신미0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소하천명		화계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1555번지(59-6번지 인근)		
	면적	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8. 31. ~ 2025. 8. 30.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매설		

남해군 공고 제2020-1097호

##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기준 변경을 통하여 구분별한 철거 및 신축을 지양하고, 기존의 건축물을 재사용하는 도시재생적인 건축문화 확립 추진

3. 주요내용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중 “(再築) : 2억5천만원 이하” 를 “(再築)·개축 : 2억5천만원 이하.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 1억원” 을 “대수선·리모델링 : 1억8천만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개보수” 를 “중축·개보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를 “제1항제1호·제2호”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 및 제5호” 를 “제1항제5호”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제2호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남해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242, 팩스 860-3739, e-mail : wakku@korea.kr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전화 055-860-32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호

###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再築) : 2억5천만원 이하” 를 “(再築)·개축 : 2억5천만원 이하.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함.” 으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 1억원” 을 “대수선 · 리모델링 : 1억8천만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개보수” 를 “증축·개보 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를 “제1항제1호·제2호”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 및 제5호” 를 “제1항제5호”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제2호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따른 남해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마을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기준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마을의 가구와 인구규모, 건축물의 입지, 지원대상 시설물의 신설 또는 개보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p> <p>1. 마을회관 신축·재축(再築) : 2억 5천만원 이하</p> <p>2. 마을회관 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 1억원 이하</p> <p>3. 마을회관 개보수 : 5천만원 이하</p> <p>4. ~ 7. (생략)</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시설의 경우 건축행위를 위한 지원을 배제한다. 다만, 개보수를 위한 지원은 할 수 있다.</p> <p>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p>	<p>제4조(지원기준 등) ①</p> <p>-----</p> <p>-----</p> <p>-----</p> <p>-----</p> <p>-----.</p> <p>1. ------(再築)· <u>개축</u> : 2억 5천만원 이하. <u>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함.</u></p> <p>2. ----- <u>대수선·리모델링</u> : <u>1억8천만원</u> -----</p> <p>3. ----- <u>증축·개보수</u> -----</p> <p>-----</p> <p>4. ~ 7.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1. <u>제1항제1호·제2호</u> -----</p>

현 행	개 정 안
건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	----- --
2. <u>제1항제2호 및 제5호</u> 의 경우, 건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	2. <u>제1항제5호</u> ----- ----- --
<u>&lt;신 설&gt;</u>	③ <u>군수는 제1항제1호, 제2호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남해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남해군 공고 제2020-1120호

##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 2. 제정이유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 및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종목 (안 제1조,제2조)

나. 선수단의 구성, 임용(안 제3조,제4조)

다. 복무 및 해임(안 제5조,제6조)

라. 보수 등의 지급, 지원(안 제7조,제8조)

마. 위탁운영(안 제9조)

바. 시행에 필요한 사항(시행규칙안)

- 규칙의 목적, 선수단의 임무 (안 제1조,제2조)
- 임용방법, 복무(안 제3조,제4조)
- 훈련 및 의무(안 제5조,제6조)
- 보수, 퇴직금, 포상금 등(안 제7조~제9조)
- 대회경비, 선수등록비, 상해보험가입(안 제10조~제12조)
- 합숙소, 장비(안 제13조,제14조)
- 준용, 운영세칙 (안 제15조,제16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 우52422,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26, 남해군청 체육진흥과
- 연락처 : 전화055-860-8683, 팩스 055-860-3749,  
e-mail : jayjay96@korea.kr

# 의 견 제 출 서

1.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 의견 제출인	성명(명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에는 복싱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선수단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주무, 단원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 주무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구분한다.

제4조(단원의 임용) ① 감독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용한다.

② 선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

③ 그 밖에 단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자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6.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7.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제7조(보수 등의 지급) ①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선수단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수단의 체력관리와 기력 향상, 편의도모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영경비, 훈련, 대회참가, 합숙소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선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용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감독 및 선수 자격 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공 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독	○ 전국대회 1위 입상자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선수 및 지도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선수	○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을 1회 이상 입상한 사람 ○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수단의 임무)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직장운동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 보좌 및 단장 유고시 단장업무 대행
3. 주무: 선수단 운영의 모든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수행
4. 감독: 소속 선수의 대회 참가 및 훈련 총괄 등
5. 선수: 훈련, 각종 대회 참가 등

제3조(단원의 임용방법)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입단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입단계약 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단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경기실적증명서 1부
5.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감독에 한정함)
6. 최종학력증명서 1부
7. 명함판 사진 2장
8. 채용신체검사서 1부
9. 서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④ 감독 및 선수는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어야 한다.
- ⑤ 단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용된 단원의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복무) ① 단원의 복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 ② 단원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과 대회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단원에게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4에 따른 특별휴가와 대회에 출전 후 연간 2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5조(훈련 및 대회참가) ① 감독은 연간 훈련 및 대회참가 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감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일일훈련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경기결과를 통하여 훈련의 미비점을 분석·보완하여야 한다.
- ③ 감독은 선수들의 평가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선수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민체전 및 전국규모 대회에 반드시 출전하여야 한다.

제6조(단원의 의무) ① 감독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와 함께 훈련에 전념하여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 ② 선수는 단장과 감독의 훈련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제3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 전 경력과 최근 성적을 감안하여 별표 1에 따라 감독과 선수의 등급을 결정한 후 별표 2의 범위에서 연봉을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퇴직금) 선수단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 등) 단원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단원에게

포상금 및 국가대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대회 및 훈련 참가경비) ① 단원의 대회 참가, 훈련 등으로 인한 출장 시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하여 식비를 1일당 10,000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선수등록비) 실업연맹가맹단체 규정에 따른 연회비 및 선수등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상해보험 가입) 군수는 단원의 훈련이나 시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하여 임용과 동시에 군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합숙소 운영)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합숙소의 관리책임자는 부단장이 된다.

② 군수는 합숙소의 임대료, 비품, 소모품비, 식비, 공공요금 등 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합숙소는 단원 중 이용을 희망하는 선수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감독은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의류 및 장비) ① 군수는 단원에게 각종 대회 참가 및 훈련에 필요한 의류와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류 구입 시 상의 앞면 왼쪽 가슴부분에 남해군청 상징마크를 부착하고, 뒷면에는 “남해군청” 문구를 새긴다.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회계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경기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제3조제3항제1호 관련)

○ 종 목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본인은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입단계약서(제3조제3항제2호 관련)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와 (이하 “단원”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군수와 단원이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본 선수단을 통해 남해군 체육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 등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속) 단원의 소속은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의무) 단원은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고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의 명예를 위해 감독과 선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 및 지급방법) 단원의 연봉 금 원은 12개월로 나누어 일정액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단, 상호 협의에 따라 연봉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성적에 따라 따로 지급한다.

제6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군수” 와 “단원” 이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

성명 : (인)

주소 :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제3조제3항제9호 관련)

본인은 남해군청 소속 복싱선수단원으로서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사항을 위반 할 때에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해임하여도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 1.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은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서 남해군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은 복싱인의 품위를 유지한다.
- 3.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은 입단과 동시에 남해군으로 주소를 이전한다.
- 4.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은 단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단장의 동의 없이 다른 실업팀으로 이적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에는 해당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별표 1]

단원의 등급결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등급	등급결정기준
감독	1등급	· 전국대회 1위 입상자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지도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등급	· 1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선수	1등급	· 현재 국가대표인 사람 · 최근 3년 이내 전국체전 1위에 2회 이상 입상한 사람
	2등급	· 최근 3년 이내 전국체전 1위에 입상한 사람 ·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에 5회 이상 입상한 사람
	3등급	· 최근 3년 이내 전국체전 3위 이상에 입상한 사람 ·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에 3회 이상 입상한 사람
	4등급	·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별표 2]

연봉의 심의범위(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등급	연봉	
		하한액	상한액
감독	1등급	40,000	50,000
	2등급	30,000	40,000
선수	1등급	55,000	70,000
	2등급	45,000	55,000
	3등급	35,000	45,000
	4등급	25,000	35,000

[별표 3]

가. 포상금 지급 기준(제9조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전국체전	전국대회	비고
1위	1,000	500	
2위	700	300	
3위	500	200	

1. 감독은 최고 수혜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2. 국제대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공헌도에 따라 정한다.

나. 직장운동경기부 국가대표수당(제9조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감독	선수	비고
국가대표수당	1진	월400	월1,000	
	2진	월200	월500	

※ 국가대표로 발탁된 자가 탈락한 경우에는 수당은 중지됨.

남해군 공고 제2020- 1122호

###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군민 및 관광객이 이용하는 군내 농어촌버스 관련 운송사업자에 대해 운송손실 부분의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더 나은 교통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목적(조례 제1조)
-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지원대상(조례 제2조)
-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제3조)
- 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지원결정(조례 제5조)
- 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지원중단(조례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연락처 : 전화055-860-3453, 팩스 860-3708,  
e-mail : mmk4444@korea.kr

## 의 견 제 출 서

1.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재정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 라 한다)로 한다.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대중교통운영자

제3조(재정지원)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3. 공영버스 운영으로 인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
-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전문용역 기관의 경영수지 분석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
- 5.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하는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등지원) ①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등지원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 4. 군수가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재정지원 조례 [별지 서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사업체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사업비	총사업비		원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원
자기자본액			원	자기자본 부담액		원
사업기간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남해군수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	------	--

첨부 서류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li> <li>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li> <li>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li> <li>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	--